#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1. **발 의 자 : 배명호** 의원외 2명

2. **제정이유**

○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귀농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여 귀농자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

○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자가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·성공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가.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3조)

-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

나. 위원회의 기능(안 제6조)

-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·심의
-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등

다.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(안 제11조)

-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실시 등

라. 귀농자에 대한 사업의 지원(안 제12조)

-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,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,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

4. **관련법령**

○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○ 「농지법」

5. 검토의견

□ 발의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본 제정 조례안은

○ 예로부터 우리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농업·농촌은 젊은이들의 이농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, FTA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.

○ 따라서 우리군도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, 도시인력의 귀농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비 지원으로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

○ 아울러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귀농 희망자를 적극유치 하기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배명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□ 주요내용은,

○ 조례안의 구성은 **전문16조와 부칙**으로 되어 있으며,

○ 귀농자의 안정적이고,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

■ 교육훈련, 귀농정착사업, 영농지원 등 각종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배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

○ 점차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군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귀농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인구증가와 농업발전과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**행·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**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,**

○ **조례안의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이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**

○ 다만, **규칙에서는** 귀농자의 지원자격, 교육훈련비 지원내용, 사업지원 내용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

○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귀농자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문제(도비 등)와 귀농자 지원에 따른 기존 농민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,

○ 또한 젊은 귀농인들의 경우 농촌정착에 가장 큰 애로와 고민 중의 하나인 자녀교육 지원방안 등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이 외에도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

- 지속적인 행·재정지원과 영농 기술지원 대책
- 철저한 사후관리와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 이농 방지 등 **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정책수립과 시행이 필요**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